

의안번호	제 129 호
의 결 연 월 일	2015년 월 일 (제 338 회)

충청북도 도로보수건설기계 운영관리조례 폐지조례안

제 출 자	충 청 북 도 지 사
제출연월일	2015년 2월 23일

법무통계담당관 심사를 마칩

충청북도 도로보수건설기계 운영관리조례 폐지조례안

의안 번호	129
----------	-----

제출연월일 : 2015년 2월 23일

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1. 제안사유

- 보유 건설기계의 감소로 민간임대와 도급공사 시행이 어렵고 자체 정비공장의 폐지 등에 따라, 주요 규정의 적용이 현실에 맞지 않아 기능을 상실한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「충청북도 도로보수건설기계 운영관리조례」를 폐지 함.

3. 의안전문 : 붙임

4. 신·구조문 대비표 : 해당 없음

5. 관계법령 발취 : 해당 없음

6. 비용추계서 : 해당 없음

충청북도 조례 제 호

충청북도 도로보수건설기계 운영관리조례 폐지조례안

충청북도 도로보수건설기계 운영관리조례는 폐지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